

## 면허세 해설

김 성 점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 I. 서 론

2000년도는 면허세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면허세 과세대상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칭이 변경된 사항, 그리고 폐지해야 할 사항들을 일제조사하여 현행 관련법령에 맞게 일제정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면허세는 1950년 국세로 신설되었다가 1954년 지방세로 이양된 후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1973년 4월 1일부터는 신고의 수리와 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로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도의 경우 도세,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구세로서 1999년도 기준 2,374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총액 대비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2000년도에는 그동안 종별구분에서 미비하였던 기준을 대폭 손질하였고 자경농민의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과 1년이상 휴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면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분 면허세를 폐지(감소추정액 2,115억원, 면허세 세액의 85%이상 차지)함으로써 면허세 세액 점유율이 지방세 총액 대비

1%이하로 낮아지게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세는 지방세의 응징과세의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세목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세목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2001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면허세의 본질·과세대상·납세의무·세율·부과징수 및 비과세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 II. 면허세의 본질

### 1. 정 의 (법 제160조)

-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
- 수수료적 성격으로 수익세에 속함

### 2. 연 혁

- 1950년 국세로 창설
- 1954년 지방세로 이양
- 1973년 신고의 수리나 검열, 심사등 행정행위 추가
  - 1972년까지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1973년 법개정으로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와 검열·심사등에 대해서도 면허세 과세

## III. 면허세의 과세대상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등의

행정청의 행위 (열거주의)

- 대상을 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 (법 제160조)
- 수시분 : 신규면허·변경면허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함

< 사 례 >

- 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월 2일에 면허의 명목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월 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면허세를, 1월 2일은 양수인이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세정 13407-1514, '97. 11. 25)
- ② 종전에 과세대상이 되어 오던 업종이 법령의 개정으로 업종명칭이 변경되었다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종전의 업종에 준하여 과세하여야 함 (도세13426-253, '93. 9. 22)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그리고 다음 면허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2년이상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라도 면허처분을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과세(영 제124조)
  - ① 매장문화재 발굴
  - ② 문화재의 국외반출
  - ③ 농지전용
  - ④ 토지형질 변경
  - ⑤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 ⑥ 사도개설
  - ⑦ 자동차형식 승인
  - ⑧ 계량기기 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 ⑨ 임목벌채
  - ⑩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⑪ 공유수면의 매립
- ⑫ 초지조성 및 전용
- 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
- ⑭ 화약류 사용
- ⑮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 ⑯ 유물복제
- ⑰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⑱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 ⑲ 임산물의 굴취·채취
- ⑳ 공장설립
- ㉑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 ㉒ 유료도로의 신설 및 개축
- ㉓ 지하수의 개발·이용
- ㉔ 골재채취
- 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㉖ 건축·대수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함)
- ㉗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공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 품목별 면허 :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 (영 제124조)

< 사 례 >

- 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고 법인 대표자의 단순한 명의변경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가 부과됨(세정13407-10, 2000. 1. 4)
- ②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구장업 변경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13407-593, '96. 6. 4)

- ③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13407-102, '99. 11. 4)
- ④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에 해당되므로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13407-643, '96. 6. 21)
- ⑤ 공인회계사의 영업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나, 공인회계사 등록만 하고 별도로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세정13407-570, '99. 5. 12)
-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별지 제28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면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 개개인별로 면허세를 부과함 (세정13407-가1114, '98. 10. 28)
- ⑦ 면허세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동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은행업·신용카드업·신탁업·보험업·양곡가공업·창고업·무역업·자동차운송사업·부동산중개업은 동법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 부터 개별법에 의한 면허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세정13407-347, '97. 7. 21)
- ⑧ 복합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한 것일 뿐, 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면허세가 과세됨 (세정13407-791, '99. 7. 2)
- ⑨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방지 조치에 대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신고절차 의제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신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면허세가 부과됨 (세정13430-965, '99. 7. 31)
- ⑩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세(수시분) 부과대상임 (세정13407-102, '99. 11. 4)
- ⑪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중별구분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증을 교부하고 있다면 ○

○ 공단이 지방세법 제169조에서 규정한 면허부여기관이 되는 것임 (세정13430-839, '99. 7. 9)

⑫ 은행지점(보험업 점포)등은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사항인 은행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는 부과되어야 함 (세정 13430-576, '98. 12. 31, 세정13430-211, '99. 11. 24)

⑬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한 것은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별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세정13430-355, 2000. 3. 7)

#### IV. 면허세 납세의무자

-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 (법 제161조)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
- 면허의 권리향유 여부에 불구 납부

#### V. 면허세 세율

- 세율 (법 제164조)

구 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 5 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함
- 광역시에 대하여 군지역은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시로 봄

## VI. 면허세의 부과징수

### 1. 납 부 (법 제165조)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함

### 2. 납 세 지 (법 제165조)

-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3. 납 기 (법 제165조)

- 정기분(간주면허) : 매년 1. 16~1. 31
- 수시분(신규면허)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 4. 납세의 효력 (법 제166조)

-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 5. 면허효력 소멸시의 기납세에 대한 조치 (법 제167조)

-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함. 이 경우 과오납금 환부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 면허의 유효기간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함

#### 6. 면허시의 납세확인 (법 제168조, 영 제127조)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 면허의 부여기관은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교란에 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 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함

#### 7. 면허에 관한 통보 및 관계서류 열람 (영 제129조, 제130조)

-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



- 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8. 면허의 취소 (법 제169조)

-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면허부여기관은 취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면허부여기관이 취소요구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VII. 면허세 비과세

###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법 제16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 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 영 제126조, 영 제126조의2)

- 제사·종교·자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함

○ 신규면허와 면허변경에 대한 비과세

- ①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
  - ※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 ②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 ③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 ④ 군납업·건설업의 면허
  - ※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모두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면허세 납세의무는 있음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에 대한 비과세

- ①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 ②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면허
  -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 ③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면허
  -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
  - 지정업무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 한한다)의 면허
- ④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

지 면허

-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임시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연혁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연혁을 비교(별첨 참조)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영치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에 해당됨
- 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 ⑥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 ⑦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 ⑧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 국세의 미과세증명,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1년이상 휴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사 례 >

- ① 사격선수 개인이 총포소지허가(개인용)를 받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총을 제외한 총포소지허가에 대하여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13407-535, 2000. 4. 20)
- ② 무선국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의 정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시분 면허세 부과대상임 (세정13407-아785, '98. 11. 3)